# 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6-218호

## 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| 제재대상 | 내용(회사명, 성명 등) |
|---|---|
| 기 타 | ○○○ |

## 2. 조치내용

□ **(원안의결)** ○○○ 수사기관 통보

## 3. 조치이유

### 가. 지적사항

□ 임원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

○ ○○○는 ◎◎◎의 감사로서 2021. 10. 27. ~ 2021. 11. 23.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(☆☆☆증권#××××××××××××)를 이용하여 자기 계산으로 ◎◎◎ 주식 합계 126,206주를 장내매수한 후 106,945주를 장내매도하여 총 3회의 소유상황 보고의무(신규 및 변동)가 발생하였음에도, 기한 내에 임원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본시장법 제173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음

### 나. 근거법규

□ 임원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

○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73조 제1항 및 제446조 제31호